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법 제52조 각 호”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 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 ----- ----- ----- ----- ----- ----- ----- ----- ----- ----- ----- ----- ----- ----- 1. ~ 7. (생략)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	1. ~ 7. (현행과 같음) 8.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각목----- ----- ----- -----

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제1항제1호 각 목-----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	--